

2012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 중소기업 범위해설



골목길 슈퍼마켓도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쉬운 사례와 문답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실무 해설서

##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목 차

## 1장. 중소기업이란?

- 1. 중소기업의 개념 ..... 1
-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3
  -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 8

##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15
-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21
- 3.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 54
- 4.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 61
- 5.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구분 ..... 67
  -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 70

## 3장. 주업종,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세부 적용기준

- 1. 주업종 기준 ..... 85
- 2.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88
- 3. 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 기준 ..... 92
- 4. 매출액 기준 ..... 95
  -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 98

## 4장. 참고자료(법령)

-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 106
- ◆ 중소기업기본법(현행, 2012.1.26 시행) ..... 109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현행, 2012.1.1 시행) ..... 117
- ◆ 중소기업 범위관련 고시(현행, 2012.1.1 시행) ..... 134

## 사례(FAQ)별 찾기

### 중소기업이란?

<번호>		<page>
1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8
2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8
3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8
4	단위농협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9
5	영농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9
6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9
7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나요?	10
8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0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요?	11
10	법인의 여러 사업장은 중소기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나요?	12
11	중소기업기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중소기업 범위 차이점은?	12

### 중소기업 범위기준

<번호>		<page>
12	상시근로자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70
13	사업자등록만 하면 중소기업이 되나요?	70
14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1
15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2
16	50:50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최다출자자는?	73
17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주식회사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73
18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4
19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식은?	74

20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외국기업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6
21	KBS가 40%, KT가 35%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76
22	기업과 기업간에 주식등을 소유할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 사례	77
23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주식등을 소유할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 사례	79
24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강화되고 기업의 규모도 커져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 판단기준은?	81
25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82
26	신설합병도 창업으로 간주하여 유예기간을 미부여 하나요?	83
27	중소기업 확인은 어디서 하며, 확인서를 발급해 주나요?	83

## 주업종,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 세부 적용기준

<번호>		<page>
28	프랜차이즈업은 주업종이 무엇인가요?	98
29	호텔이 숙박보다 커피숍 등 부대업의 매출이 많은 경우 주업종은?	98
30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은?	98
31	다른회사의 PC를 구입하여 자사의 S/W를 탑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은?	99
32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	99
33	외국인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요?	99
34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요?	100
35	여러개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100
36	해외 출장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도 상시근로자인가요?	100
3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기에 한번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01
38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란?	101
39	중도 퇴사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는?	102
40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자본금 산정은?	102
41	결산일 변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되는 경우 매출액은?	103

## 중소기업 기준(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이 각각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다르게 적용

-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것

**<별표1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12.1.1부터)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12.1.1부터)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비영리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영리 사회적기업은 종전과 같이 1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상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회적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사회적기업





# 1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 1 중소기업의 개념

-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 중소기업입니다.

### Tip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40%, 코스닥 상장기업의 80%가 중소기업임을 참고 바랍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
  -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소재의 생산기지
  - 일자리의 88%를 담당
  - 수출의 32%, 생산의 46%를 담당, 일상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생산
-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R&D지원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Tip

1.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11년 7월부터 정의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간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업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 포함)을 대기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등 350여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안내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비즈인포)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알아보기

### 지원시책 안내책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mba.go.kr>) 메인화면에서 '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파일 출력

- \* 2012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주제·분야·기관별로 수록

### 지원시책별 실시간 정보

비즈인포(<http://www.bizinfo.go.kr>)에서 검색

-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350여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시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련사이트 링크기능 등 제공

### Tip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 또는 업종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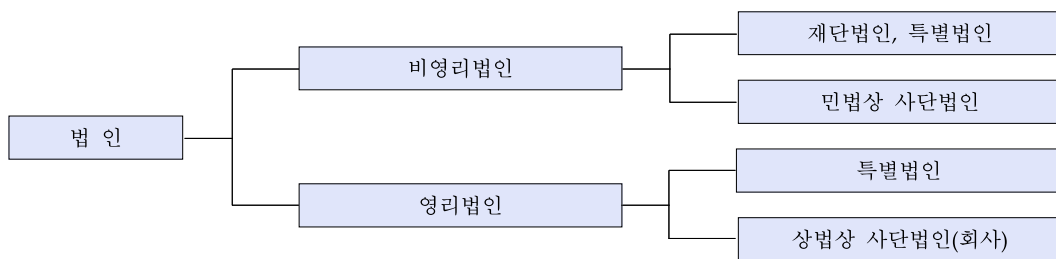
※ 흔히 임금을 목적으로 출근하여 일하는 직장을 회사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자체·학교 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법률적으로 회사가 아닙니다.

### Tip

#### 1. 기업이란?

- ①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져야 함
-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함
- ④ 인적·물적 조직을 가져야 함

2. 법인이란 사람(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한지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비영리법인은 이익분배가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사설학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26일부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영리 기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등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1** 개인사업자인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또는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3** 사회복지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26일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4**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5** 새마을금고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6**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비영리 사회적 기업

종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었으나, 2012년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단체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1**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2012년 1월 26일부터는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종전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편입된 것은 그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 사회적기업은 종전과 같이 영리기업의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메 모**

-----

-----

-----

-----

-----

-----

-----

-----

-----

-----

-----

-----

-----

-----

-----

-----

-----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 사례1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례2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 근로자가 0명이거나 극소수라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사례3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되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비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이 주업종이 됩니다.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회사)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사례4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례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사례6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례7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령은 국내법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해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지원 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인데 이는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경우, 해당 영업소는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8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입니다.

사례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특별법인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은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타 법률에서 중소기업자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만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입니다. 만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었다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항은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한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들 비영리법인·단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의 중소기업자 간주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ip**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입찰용으로만 발급하며, 그 밖의 용도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공입찰 목적 이외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은 판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무자가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다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10

A법인이 동일 법인 명의로 타 지역에 B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B공장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 B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11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적 용 업 종	• 모든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
주업종	• 매출액이 큰 업종	• 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별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상 한 기 준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 자산총액 5,000억 원 • 자기자본 1,000억 원 •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 자산총액 5,000억 원 • 자기자본 1,000억 원 • 매출액 1,000억 원

독립성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예외를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li> <li>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업 제도 적용(2011.1.1부터)</li> <li>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업 제도 적용(2012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li> <li>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유 예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li> <li>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의 합병</li> <li>-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li> <li>- 독립성 기준 미충족</li> <li>- 창업일 이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li> <li>- 상한 기준 초과('12.1.1부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li> <li>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의 합병</li> <li>-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li> <li>- 독립성 기준 미충족</li> <li>-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li> </ul> </li> </ul>

<b>메 모</b>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레모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notes or a memo.

##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의 외형에 따른 규모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상한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으로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Tip

업종별 규모기준을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운영하는 이유는 업종분류가 대분류로 단순화됨에 따라,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이라도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거나 자본금(매출액)이 큰 업종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만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250명이지만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면 A사를 흔히 생각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업종별 규모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A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누구나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자산총액·자기자본·매출액 등이 매우 큰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바로 상한기준입니다.

- 종전에 중소기업의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만이 해당되었으나, 2012년 1월 26일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범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1 업종별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업종에 따라 아래의 [별표1]에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것

<별표1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Ti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별표1]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합니다. 주업종 판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5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2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Tip

1. 자기자본과 매출액 상한기준은 2012.1.1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2.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한기준을 실무적으로 졸업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졸업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12페이지 <사례11> 참조)

## 3 사회적 기업의 규모기준

- 사회적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

###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음 사업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 다만, 중소기업이 법령에서 정한 유예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유예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페이지> 참조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2. (생략)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생략)

### 메모

---

---

---

---

---

---

---

## 핵심 포인트

### 업종별 기준

업종별 규모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두 기준을 모두 벗어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1**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50명, 매출액 1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도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입니다. A기업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자본금 3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제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입니다.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3** 건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350명, 자본금 35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건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입니다. A기업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벗어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규모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상한 기준

상한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에서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하나의 기준이 무한대로 커지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별 규모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자기자본 1,000억 원,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200명, 자본금 7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업종별 규모기준은 충족하지만, 상한기준(상시 근로자 수 1,000명)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2**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3년 평균 매출액 1,2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법에서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조바랍니다.

### Tip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상한기준은 1,000억 원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3**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 종전에는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Tip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한기준(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규모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독립성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2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듯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년에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독립성 기준은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하며, 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간주하여 독립성 기준(관계기업 제도는 제외)을 적용합니다.
- 현행 독립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Tip

독립성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2년 1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삼성, 한국전력공사 등 55개 기업 집단(1,642개 업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Tip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과거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변화된 것입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변동사항은 매월 초순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http://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 다.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핵심 포인트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자본금 10억 원입니다. 2010년 3월 9일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 A사는 개별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지정된 2010년 3월 9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적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었던 기업이 지정해제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건 외의 다른 범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날부터 중소기업입니다.

###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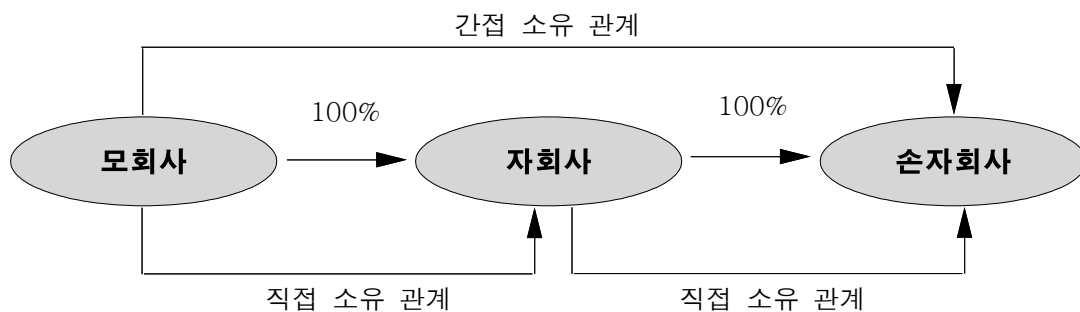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라도 이에 버금가는 매우 큰 기업집단이 다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달하는 회사가 660여개로 추정(2011년 기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이러한 형태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므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까지 성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자 :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Tip**

1. 동 규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국법인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환율과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에서 낮은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주식등'이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에 적용됩니다.

-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소유의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이 2009년 3월 27일부터 적용된 간접소유 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2012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상법」상 모든 회사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62페이지 경과조치 참조)

-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금융투자업자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고시에서 정한 투자목적기업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생략)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생략)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2조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간접소유비율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핵심 포인트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자본금 5,000만 원입니다. 2010년 3월 1일에 자산총액 1조 원인 기업이 60%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A사는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2010년 3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2**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대출자자가 아니므로 B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A기업이 100% 소유한 사례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3** A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70%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 종전에는 동 규정을 주식회사에만 적용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2011년 12월31일 이전부터 동 관계가 성립한 기업이라면 부칙<23412호>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4**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다른 범위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인가요?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4** 자산총액 1조 원인 「상법」상 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A기업의 지분을 60% 인수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 2010년 3월 16일 이전까지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회사에 한함)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0년 3월 16일부터는 예외규정이 신설[「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청고시 2012-02호) 참조]되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 이외의 다른 범주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를 2009년 3월 25일에 법령에 반영하고, 1년 9개월 가량의 시행유예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등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Tip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 출자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제도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상법」상 모든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다만,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모두 관계기업인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한다고 하여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것 또한 아닙니다.

- 즉,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하는 기업 간에 주식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인가?



주식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는가?

#### Tip

1. 관계기업 제도는 적용 방법이 복잡하므로 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명단을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업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최대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명단을 게시하는 것으로서, 동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관련자료 확보의 부족등으로 기업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선 중소기업지원 실무자들께서는 기업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개별 건별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지원기관에게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Tip**

1. 법령상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관계회사'로 하던 것을 '관계기업'으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2. 관계기업 제도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모두 국내기업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즉, 외국기업이 모회사이거나 자회사인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대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자회사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만 해당)

※ 특수관계자

-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Tip**

법령에서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특수관계자로 표현하였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되게 됩니다.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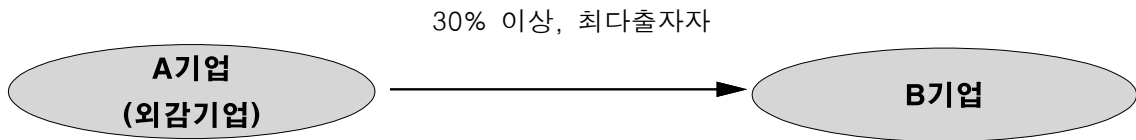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이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지배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만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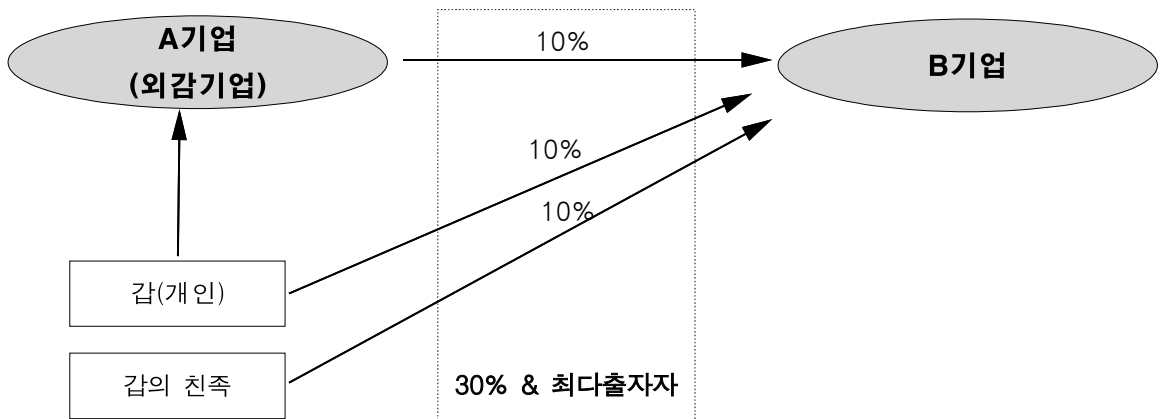
다만, 지배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과 친족이 합산하여 그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지배기업과 무관한 개인과 그 개인의 친족들이 종속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1**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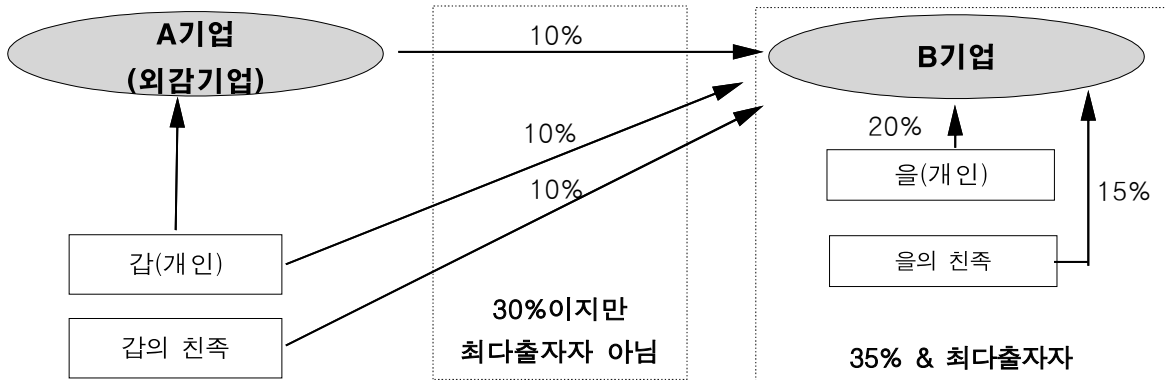
**사례 2**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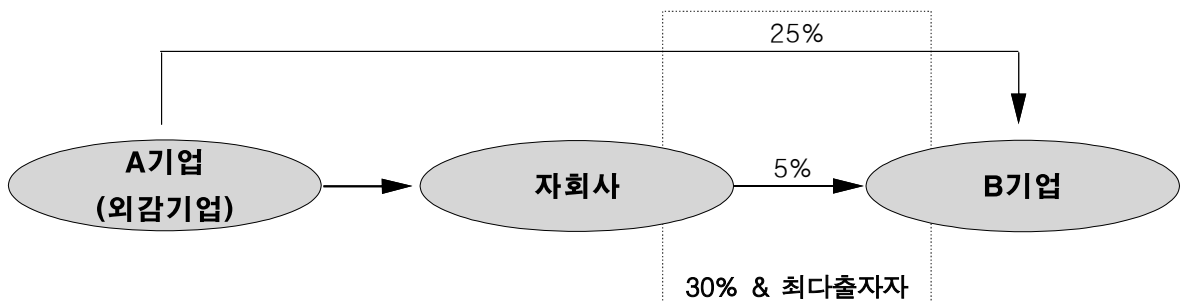
-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음.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

②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 제1항제2호 관련)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모든 사례에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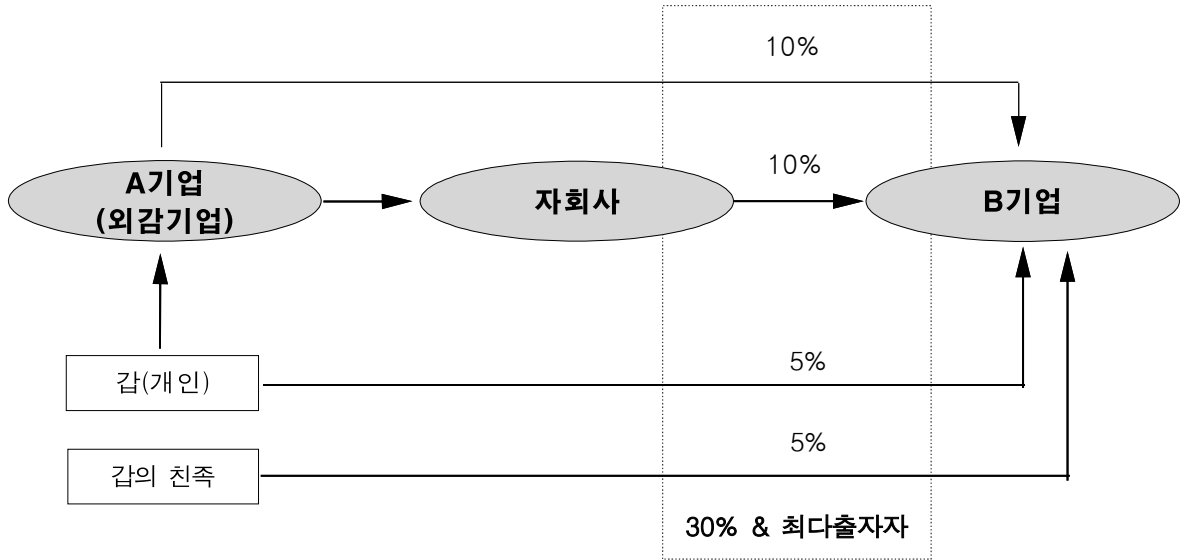
사례 1



-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 ※ 자회사와 B기업 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두 기업 모두 A기업의 종속기업이므로 A기업, 자회사, B기업은 모두 관계기업임. 모든 사례에서 같음



사례 2



-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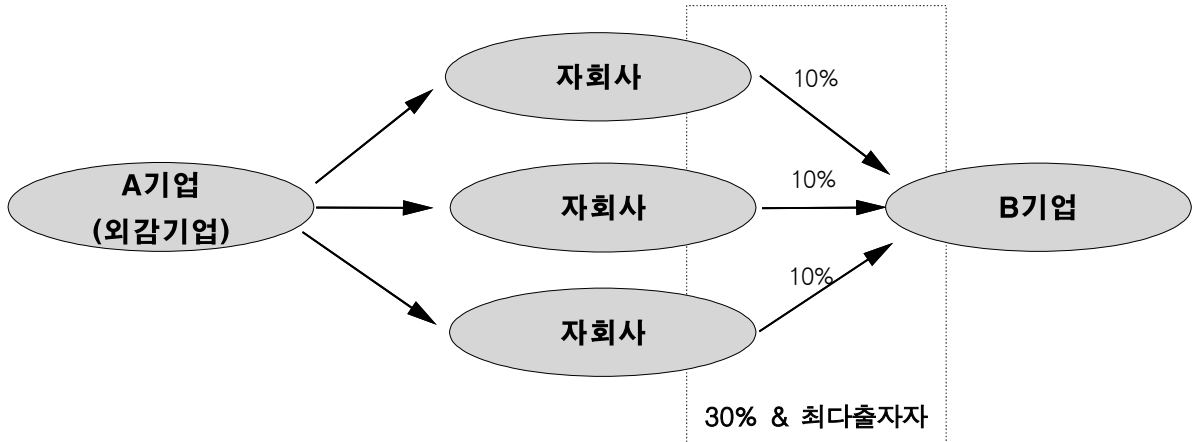
③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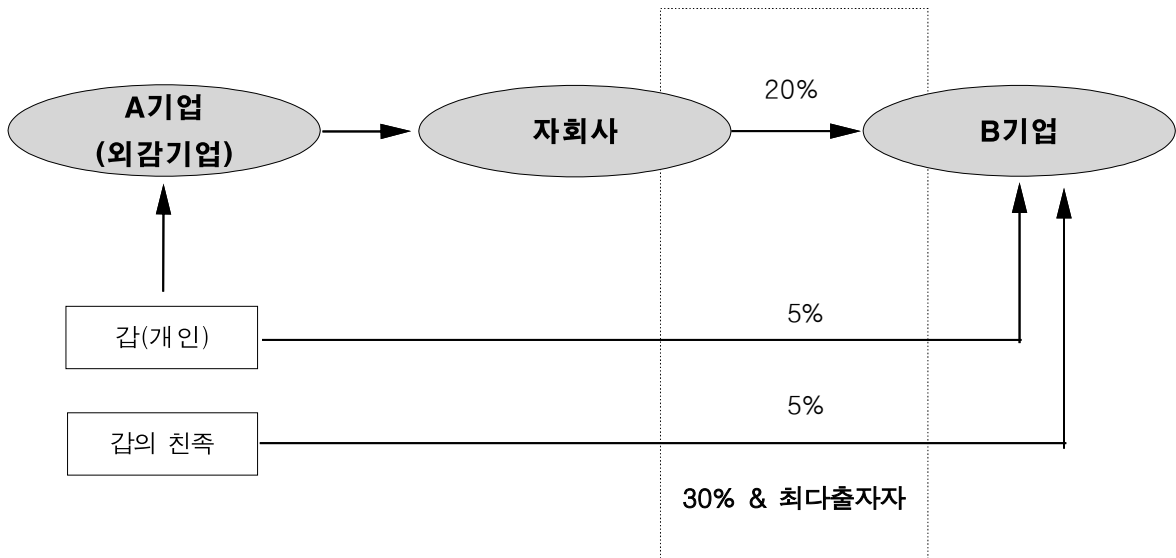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가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 및 B기업), 자회사의 종속기업(B기업)
-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및 자회사)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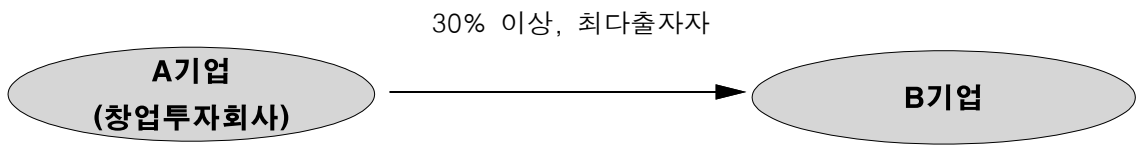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④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 ⑤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어느 하나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배 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
- 위의 5가지 사례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2-02호)」 참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A기업이 창업투자회사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어 지배·종속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며, 관계기업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2조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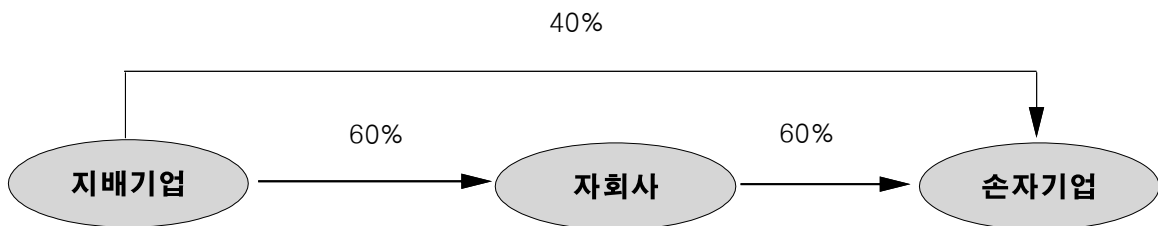
-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이 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 관계기업 간에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자기자본(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을 주식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Tip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4호 관련)

- 관계기업 제도에서 용어의 뜻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식등의 소유 비율	실질적 지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
	형식적 지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미만 소유
주식등의 소유 경로	직접 지배	지배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
	간접 지배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의 주식등을 소유



- 실질적 지배 : 지배기업과 자회사(60%), 자회사와 손자기업(60%)
- 형식적 지배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60%)
- 직접 지배 : 지배기업과 자회사(60%), 자회사와 손자기업(60%), 지배기업과 손자기업(40%)
- 간접 지배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60%)

※ 자회사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손자기업 : 자회사의 종속기업

**Tip**

합산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뿐 아니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라도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기준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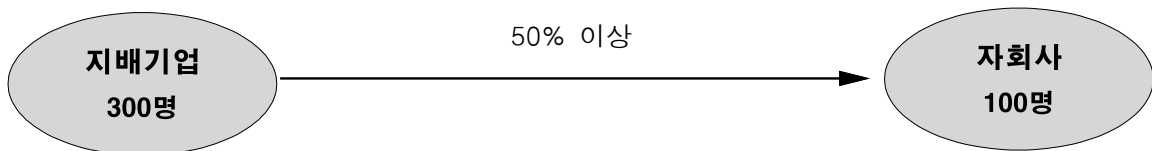
**<산정방식의 기본 이해>**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합산 방법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로 간주하여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합산 방법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 소유 비율을 100%로 간주하고,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과 곱한 비율로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Tip**

별표2에서는 모든 종속기업을 '자회사'로 규정합니다. 3조의2에서 정의 된 '자회사'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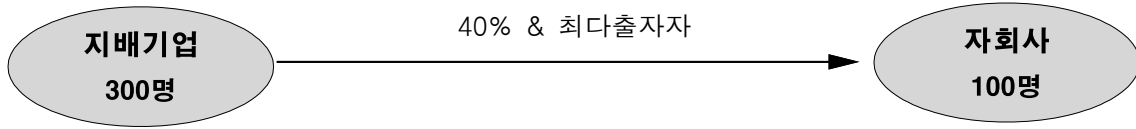
**①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100명) = 400명
- 자회사 : 자회사(100명) + 지배기업(300명) = 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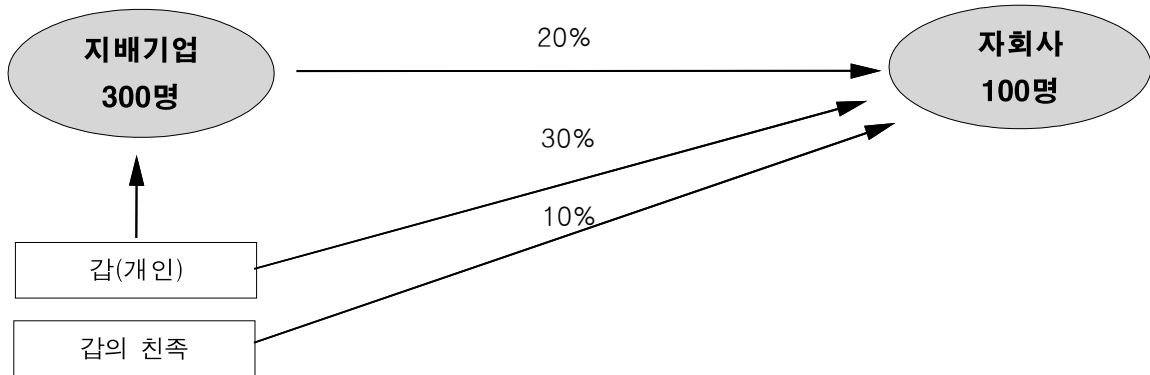
②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사례 1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100명×40%) = 340명
- 자회사 : 자회사(100명) + 지배기업(300명×40%) = 220명

사례 2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100명×20%) = 320명
- 자회사 : 자회사(100명) + 지배기업(300명×20%) = 160명

Tip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간의 지분비율만으로 산정합니다. 즉,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등은 관계기업 성립여부에만 관여하며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에서는 배제합니다.

③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 + **손자기업(100명×40%)** = 540명  
 ※ **간접 소유 비율 : 100% × 40% = 40%**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 + 손자기업(100명×40%) = 54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40%)** = 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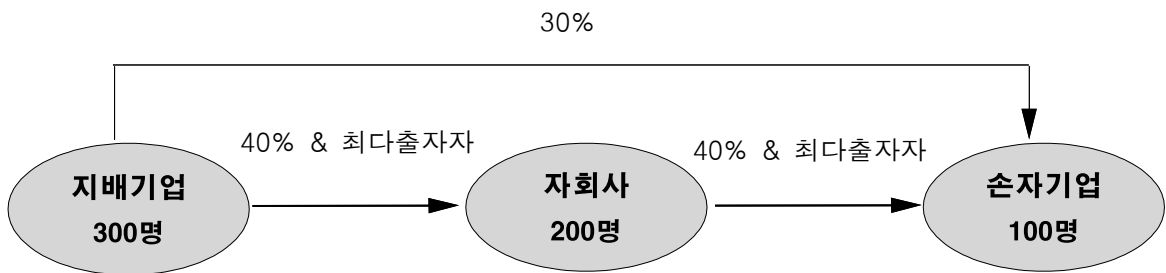
④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기업(100명×16%)** = 396명  
 ※ **간접 소유 비율 : 40% × 40% = 16%**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모회사(300명×40%) + 손자기업(100명×40%) = 36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16%)** = 2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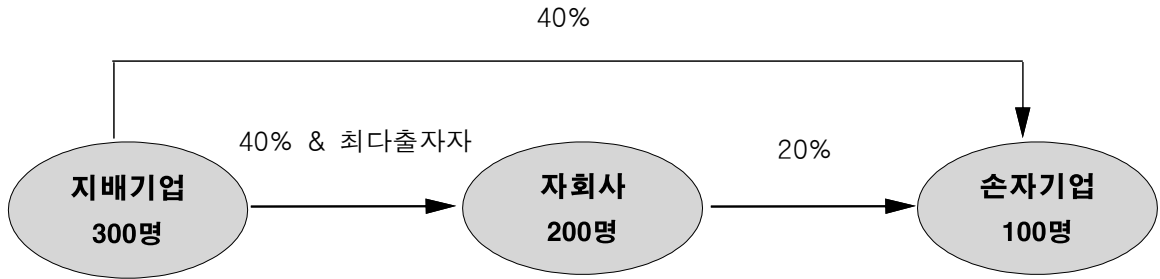
⑤ 지배기업 및 자회사가 손자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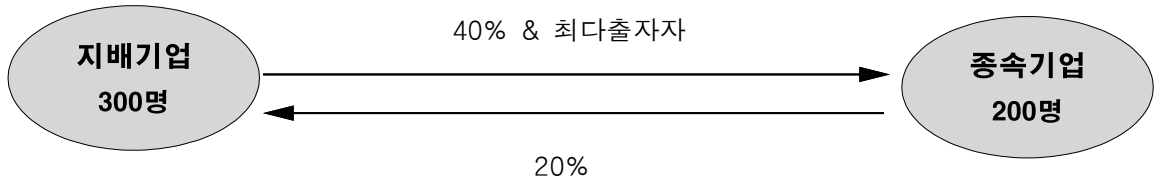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기업(100명×46%)** = 426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40%) + 손자기업(100명×40%) = 36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46%)** = 338명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소유 비율 = 직접 30% + 간접16%(40%×40%) = 46%**  
 ※ **자회사와 손자기업 간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서로 합산합니다.**

사례 2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기업(100명×48%) = 426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40%)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명) + 지배기업(300명×46%) = 338명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소유 비율 = 직접 40% + 간접 8%(40%×20%) = 48%
- ※ 자회사와 손자기업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 간에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종속기업(200명×40%) = 380명
- 종속기업 : 종속기업(200명) + 지배기업(300명×40%) = 320명
-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 소유하고 있는 비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

Tip

상호 간에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비율이 큰 비율에 따라 합산합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 ~ 나. (생략)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 [별표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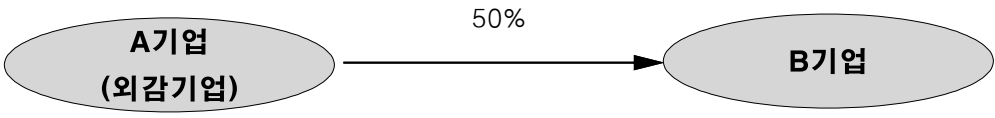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핵심 포인트

### 관계 기업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일 경우에만 관계기업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은 서로 관계기업으로 봅니다.

**적용 1**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입니다.



**Tip**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인 경우 출자총액을 말합니다. 이는 관계기업이 상법상 모든 회사형태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적용 2** 유한회사인 A기업이 외감기업인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3** 농협협동조합이 B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합니다. 농협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6** A기업(주식회사)가 B기업(유한회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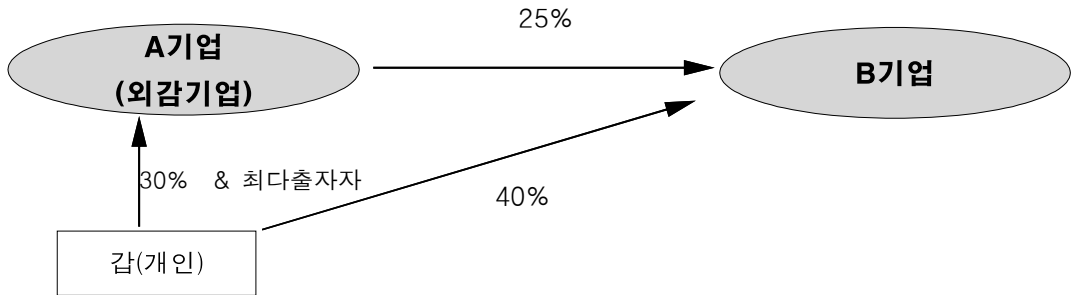
☞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이면 모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면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는 성립하지만 관계기업은 아닙니다.

**Tip**

관계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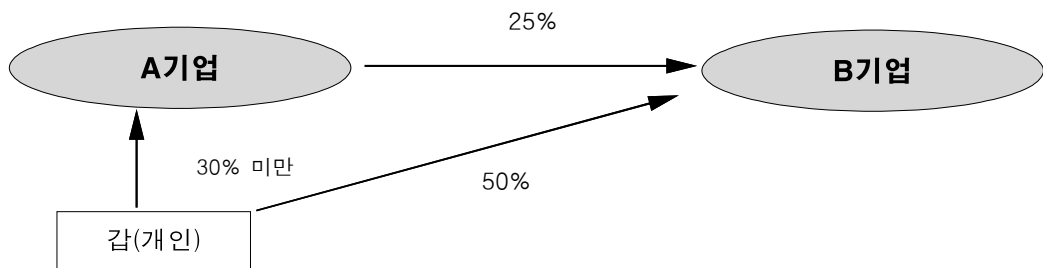
**적용 4**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25%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갑이 B기업의 주식등을 40% 소유한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A기업과 같이 B기업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합산하면 65%로서 30% 이상이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입니다.



**적용 5**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25%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등을 25% 소유한 갑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한 경우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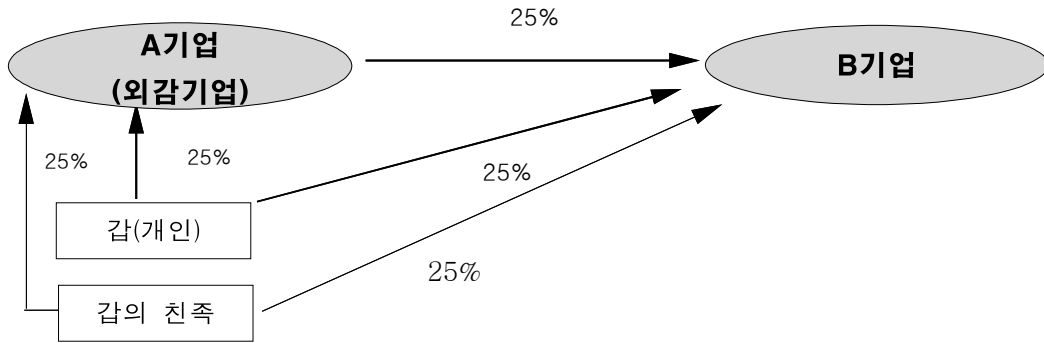
☞ A기업이 소유한 주식등이 25%이므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한 주식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주식의 합산은 개인이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A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용 6**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습니다. A기업의 주식등을 갑과 갑의 친족이 각각 25% 소유하고, 갑과 갑의 친족이 B기업의 주식을 각각 25% 소유한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갑이 A기업의 주식을 친족과 합하여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고, 그 갑과 갑의 친족이 B기업의 주식을 각각 25% 소유

하고 있으므로, 결국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합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75% 소유한 것이 되어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입니다.



**적용 7** A기업의 주식등은 B기업(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A기업은 C기업(중국에 소재한 기업)의 주식등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종속 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기업은 같은 영 제2조 제3호에서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B기업 및 C기업과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Tip**

1. 관계기업 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만 적용합니다.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란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서, 동 법률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 8** 갑(개인)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등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관계기업인가요?

☞ 2012년 이전까지는 갑이 지배기업으로서 관계기업이 성립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개인이 지배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Tip**

**적용 8** 에서 A기업과 B기업 간 주식등의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용 4** 의 사례가 되어 관계기업입니다.



**적용 9** A기업(주권상장법인)이 B기업의 주식등을 20% 소유하고, A기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닌 갑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갑이 A기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주식등의 소유 비율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A기업은 B기업의 주식등을 20%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A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고 그 B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며 관계기업입니다.

**적용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70% 소유한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관계기업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은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금 등 중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청 고시 2012-02호)」 참조]가 있습니다.

**적용 11** A기업(지배기업)과 B기업(종속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전량 제3의 기업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즉시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일에 주식등을 전량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 사업연도 중에는 여전히 관계기업입니다. 다만, 2012년가 되면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가 2011년 12월 31일이므로, 주식등 소유비율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Ti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로 규정함

**적용 12** A기업(지배기업)은 B기업(종속기업)과 2012년부터 관계기업이 되었는데, 2012년 5월 1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전량 제3의 기업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2012년 5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판정기간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의 주식등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2012년도에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관계기업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판정기간 변경에 따른 과도기로서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및 적용기간을 따르므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도 관계기업입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은 2013년 4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상시  
근로  
자수  
산정**

관계기업 제도의 최종 목적은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지배기업을 외부감사대상 기업이거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기업으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Tip**

“상시근로자수등”이라함은 제3조제2호 다목에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을 축약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방법은 상시근로자수 뿐만 아니라 자본금·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 1** A기업(200명)이 B기업(100명)의 주식등을 70%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기업(지배기업)이 B기업(종속기업)을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지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A기업 = 200명 + 100명×100% = 300명

- B기업 = 100명 + 200명×100% = 300명

**적용 2** A기업(200명)이 B기업(100명)의 주식등을 40%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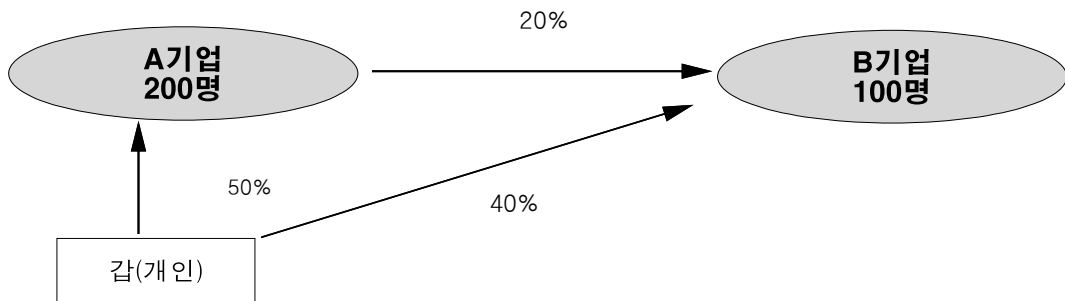
☞ A기업(지배기업)이 B기업(종속기업)을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A기업 = 200명 + 100명×40% = 240명
- B기업 = 100명 + 200명×40% = 1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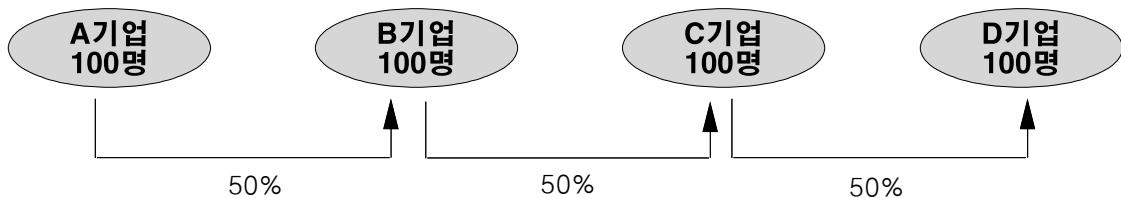
**적용 3** A기업(200명)이 B기업(100명)의 주식등을 20%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갑이 B기업의 주식등을 40%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기업(지배기업)이 B기업(종속기업)을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A기업 = 200명 + 100명×20% = 220명
- B기업 = 100명 + 200명×20% = 140명



**적용 4**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Tip**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은 간접 소유의 경우 해당 기업을 기준으로 상·하 2단계까지만 적용합니다.

☞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100명) + B기업(100명) + C기업(100명×50%) = 250명

- B기업 = B기업(100명) + A기업(100명) + C기업(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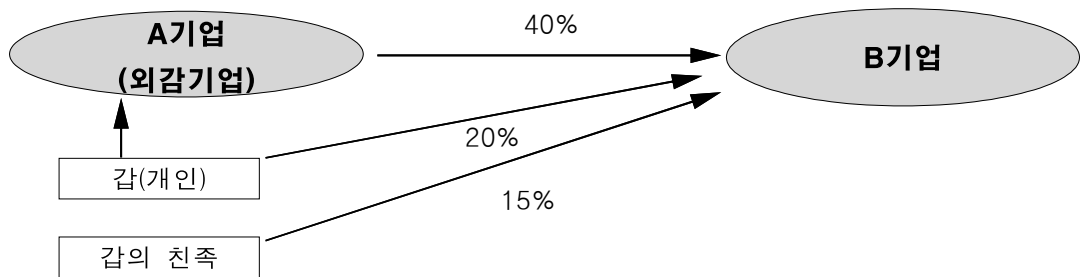
+ D기업(100명×50%) = 350명

- C기업 = C기업(100명) + A기업(100명×50%) + B기업(100명)

+ D기업(100명) = 350명

- D기업 = D기업(100명) + B기업(100명×50%) + C기업(100명) = 250명

**적용 5**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자본금 70억 원, 자산총액 1,500억 원, 자기자본 100억 원, 매출액 1,000억 원)이 B기업(상시 근로자 수 100명, 자본금 30억 원, 자산총액 500억 원, 자기자본 5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갑은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면 75%로서 50%를 초과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② 지배기업인 A기업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③ 관계기업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40명, 자본금 82억 원, 자산총액 1,700억 원, 자기자본 120억 원, 매출액 1,120억 원(산정산식 : A기업 + B기업 × 40%)

- B기업 : 상시 근로자 수 220명, 자본금 58억 원, 자산총액 1,100억 원, 자기자본 90억 원, 매출액 700억 원(산정산식 : B기업 + A기업 × 40%)

④ 최종으로 중소기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은 관계기업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이 제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B기업은 관계기업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5** 2012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인 A기업(지배기업)은 12월 말 결산법인이고, B기업(종속기업)은 3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기준은?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성립의 기준이 되는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인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시근로자수등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은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2011.1.1~2011.12.3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은 종속기업의 직전 사업연도(2010.4.1~2011.3.31)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메 모

---

---

---

---

---

---

---

---

## 3

##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 어떤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나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현재시점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3개월 간은 재무현황 등 근거자료 확인 및 제출이 곤란하여 기업과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Tip

1. 종전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중소기업 여부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假)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회계장부 등을 활용함.
  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원시책 주관기관에게 제출해서 소명할 의무가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들이 연초에 집중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와 같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확정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재무현황을 활용하되, 중소기업 여부는 새로운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제3조의3 신설)

※ 다만,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 및 인정기간의 변경에 따른 과도기로서,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최초 3개월 간은 종전의 방법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여부 판정 및 인정기간 사례 (12월 결산법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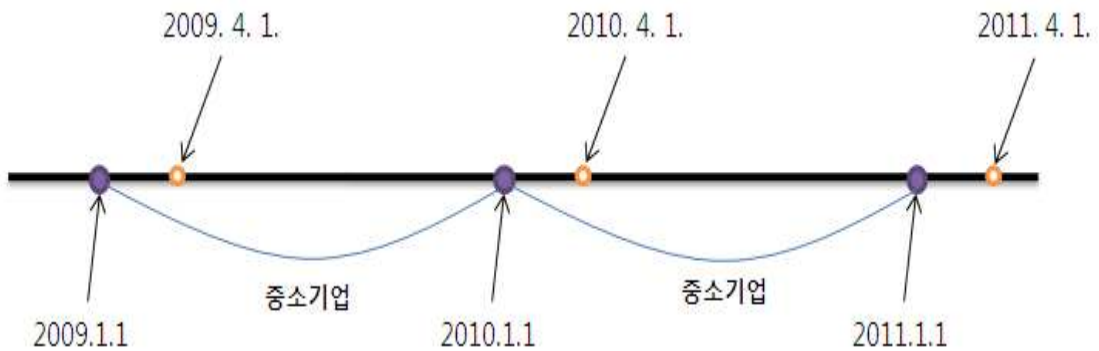
2012  
이 전

### 2009년도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

2008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 2010년도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

2009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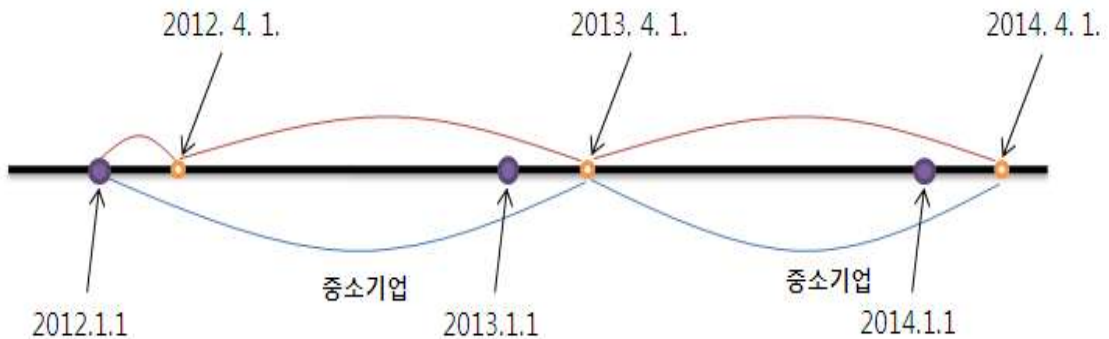
2012  
이 후

### 2012년도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

2011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 2013년도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

2012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일반적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 밖에 창업·합병·분할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독립성 기준 등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중소기업 청 고시 2012-02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3조

- ①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메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핵심 포인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일반적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판단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적용 1** 2009년도에 창업한 A기업(12월 결산법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 2012 사업연도 : A기업은 2009년도에 창업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까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동 기간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2013 사업연도 : 2012년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동 기간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Tip

2012년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방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바로 다음날부터 가재무제표, 기타 재무제표에 준하여 증빙 가능한 서류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2** 2010년도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 2012 사업연도 : A기업은 2009년도에 창업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사업기간(2011.4.1~2012.3.31)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임

니다. 따라서 2011년도(2011.4.1~2012.3.31)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동 기간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2013 사업연도 : 2012년도(2012.4.1~2013.3.31)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동 기간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적용 3** A기업은 2011년 5월 1일에 창업하였음. 2012년 7월 20일 현재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상시 근로자 수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매달 말일 인원을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매출액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2012년 7월 20일 현재 위에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각 호의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창업 후 12개월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유예기간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적용 1**, **적용 2**의 형태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기업에 준하여 상시근로자수등을 재산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Tip**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 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을 참조

**적용 4** A기업은 2012년 5월 30일 현재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2012년 중에 주식의 70%를 B기업(대기업, 12월 말일 결산법인)이 인수하였다면 중소기업 여부는?

☞ 개별 기업의 크기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주식을 취득한 B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기업 제도는 지배기업(B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에는 두 기업이 주식 소유 관계가 없으므로 2012년도 중에는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아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배기업의 2012년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 출자관계가 유지된다면 2013년 4월 1일부터는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Tip**

관계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판단합니다.

**적용 5** 2011년도 중에 A기업(12월 말일 결산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두 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2012년 3월에 주식을 전량 A기업과 무관한 제3자에게 매각하면 더 이상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적용 4**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계기업 성립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지분관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3월 31까지는 여전히 관계기업이며, 2013년 4월 1일부터는 주식 변동 사항이 반영되어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 1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자금·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 방향의 재설정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Tip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재무현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라 함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됩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 ④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2012.1.1부터 적용)
- ⑤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 Tip

대기업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 포함)을 대기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경과조치

- 중소기업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규모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기업은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방법으로 법령에는 반영하되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미래의 시점으로 정하여 개정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방법과 개정과 동시에 시행

하되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변경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경우에만 일정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과조치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Tip**

관계기업 제도와 자기자본·매출액 상한기준은 2009년 3월 25일에 법령에 반영하고 시행일은 각각 2011년 1월 1일과 2012년 1월 1일로 함으로서 시행일을 늦추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경과조치를 3년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예기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사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강화된 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기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
적용방식	일률적으로 적용  ※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  ※ 법령 개정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Tip**

유예기간과 달리 경과조치는 개정규정 시행의 시급성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3412호>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1368호>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포인트**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6월 말 결산법인인 A기업이 2009년 사업연도(2009.7.1 ~ 2010.6.30) 중의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및 자본금이 각각 300명과 80억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부여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적용 2**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2008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유예기간 중인 2009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 되어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중소기업이 되나요?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도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되고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3** 한번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 현행 규정은 대기업이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으로 된 후 다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또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유예기간이 반복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으로 계속 잔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 부여하는 방안 등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최초 1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예기간을 1회 받았던 기업이 또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이라도 세법상에서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4**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흡수합병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즉시 제외되나요?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은 합병에 따른 법인 변경 등기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5** 호텔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50여 명을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7일에 호텔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축소되었는데 유예기간이 부여되나요?

☞ 호텔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종전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에서 2009년 3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가 2009년 3월 27일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미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경과조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3.25>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6**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간접 소유의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이었다가 동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요건이 된 경우는 동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3.25>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는 2009년 3월 26일 이전부터 간접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9년 3월 27일 이후에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유예기간 또한 부여 되지 않습니다.

**적용 6** 유한회사인 A기업은 자산총액이 1조 원인 B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중소기업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즉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2012년 이전까지는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동 규정 외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2012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동 규정을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모든 회사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으며, A기업과 같이 유한회사인 경우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부칙 <23412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Tip** 2012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규정

1.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모든 회사로 확대 적용
2. 제3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대상을 확대
3. 제4조제2항의 신설로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주업종의 판단기준 변경 등

5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구분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0명인 기업부터 300인 이상인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당 업 종	규 모 기 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10명 미만	10명 이상 ~ 50명 미만	50인 이상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명 미만	5명 이상 ~ 50명 미만	50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Tip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구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매출액, 자산 총액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핵심 포인트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09년에 49명이고, 자본금이 90억 원인 경우 2010년에는 소기업인가요?

☞ 제조업의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므로 A기업은 소기업입니다.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 사례12 상시 근로자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의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 또는 대표이사 1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0(제로)명이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참고로, 「상법」에서는 1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하한선 기준(5,000만 원)도 2009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 사례13 사업자등록만 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기업이 성립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자등록을 한 날,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성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익에 따른 조세 징수의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14

A기업과 B기업은 2009년 말일 현재 중소기업이었으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습니다. A사가 2009년 말일에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기업은 2009년 말일 현재 최초로 상한 기준(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2년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A기업의 유예기간은 2년 동안만 인정됩니다.

B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호에 따라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현행(2010년 5월 현재) 법령에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지만, 상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인 A기업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데 반해서 자회사인 B기업은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여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입니다.

사례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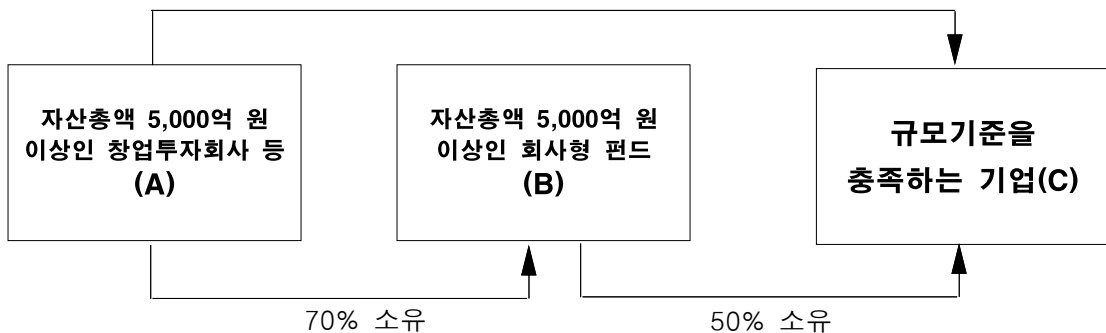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흔히 말하는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형태상 크게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와 투자신탁 및 조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주식을 소유하는 펀드의 설립 형태가 상법상 회사형이면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동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회사형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각 호 및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청 고시 2012-02호)」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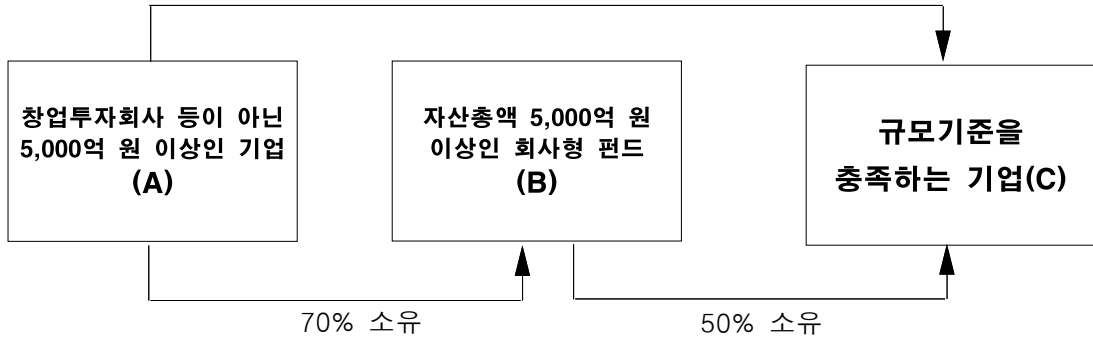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각 호 및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청 고시 2012-02호)」 제2조에서 지정하는 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등) 이외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형 펀드의 출자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간접소유 규정을 종전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1> 아래 그림에서 C기업의 주식을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적용2> 아래 그림에서 C기업의 주식을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16**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17**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기업은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가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은 규모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사례18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A기업의 임원이 B기업의 주식등을 각각 25%와 40%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일차적으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임원이 우회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최대출자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기업간 주식등의 소유비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 간 주식등의 소유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대출자자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우회적으로 소유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의 2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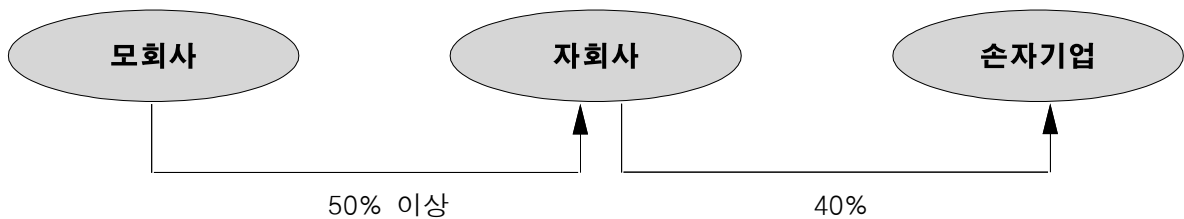
사례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간접 소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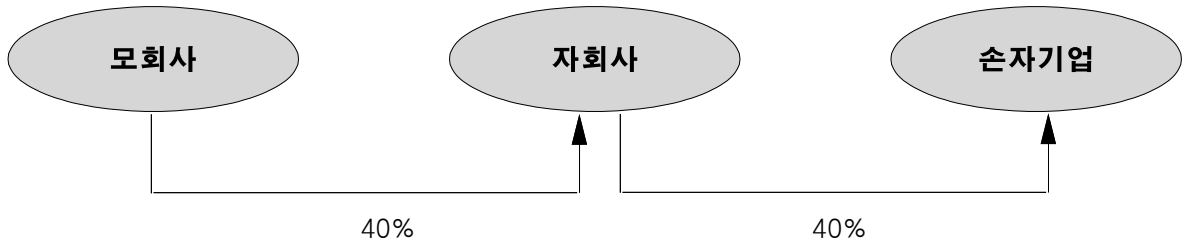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간접 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접 소유 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로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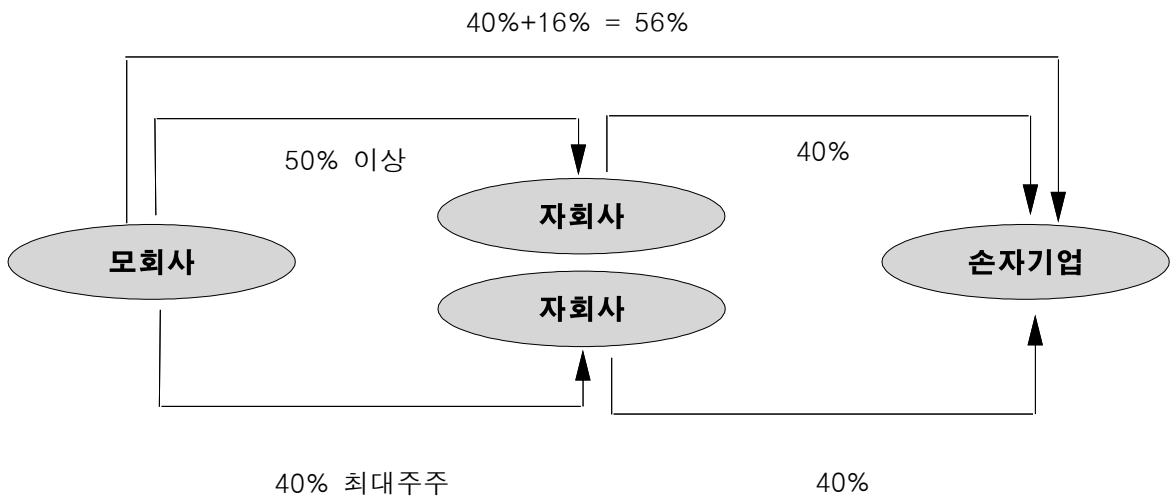
<적용1> 아래의 그림은 모회사가 손자기업에 대해 40%를 간접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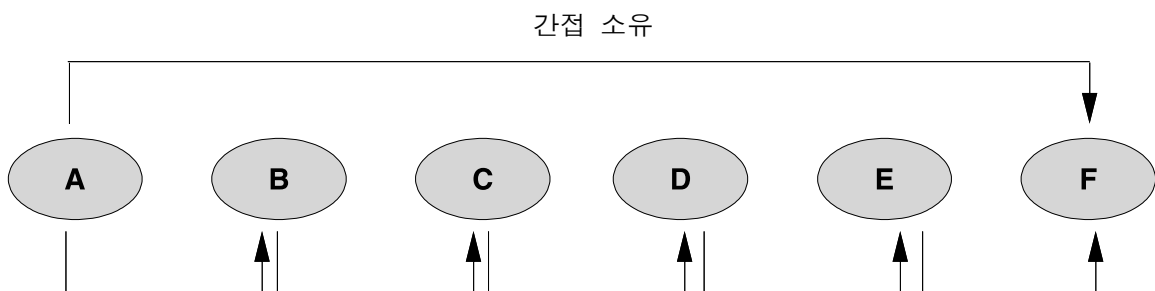
<적용2> 아래의 그림은 모회사가 손자기업에 대해 16%를 간접 소유



<적용3> 모회사와 손자기업 사이에 두 개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



<적용4> 간접 소유는 3개 이상의 연속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간접 소유에 따른 최대주주 여부는 각 단계별 최대주주가 연속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사례20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A기업(외국인투자회사)의 주식을 2008년 3월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60% 소유하는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27일 이전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국내상장법인일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05년 12월 27일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비상장기업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2005년 12월 26일 이전부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칙<제19189호, 2005.12.27> 제2항 및 부칙<제20260호, 2007.9.10>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8년 12년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2005년 12월 27일 이후에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시점부터 즉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08년 3월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을 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09년 11월 19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과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21

A기업의 주식을 공기업인 KBS가 40%, KT가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닙니다. 이 경우 2010.3월 현재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KBS(한국방송공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KT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KT가 A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A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사례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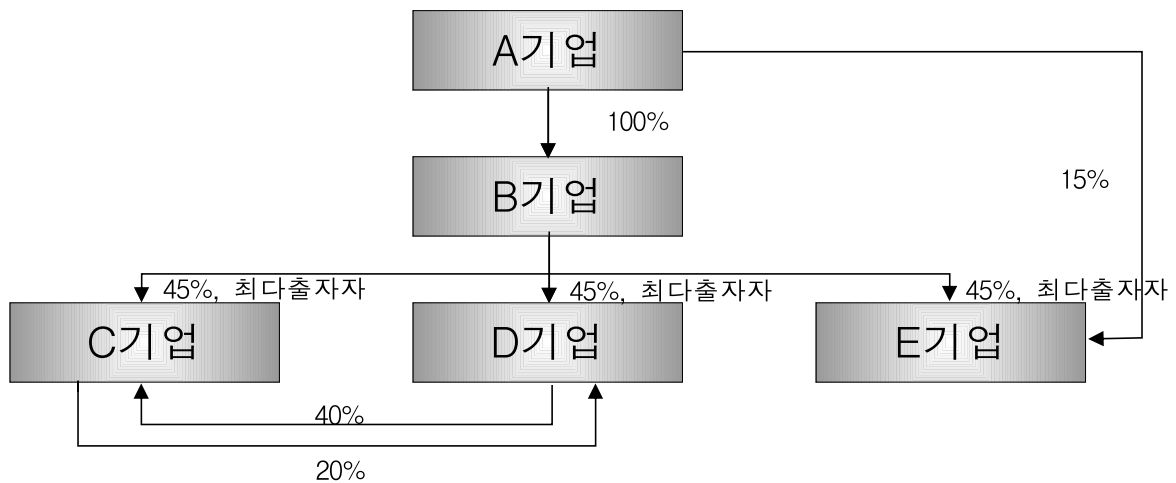
아래 기업군의 경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등은?  
<주식 소유 비율(%)>

주주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A기업		100			15
B기업			45	45	45
C기업				40	
D기업			20		
기타법인					15
기타			35	15	25
합계		100	100	100	100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 등(명, 억 원)>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상시 근로자 수	470	80	15	22	15
자산총액	7,900	450	150	69	27
매출액	3,000	200	29	110	58
자본금	250	300	1	1	2
자기자본	6,500	400	7.7	2.3	5

① 위의 표를 주식 소유 관계에 따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없음	직접 지배 : B, E 간접 지배 : C, D, E
B기업	직접 지배 : A 간접 지배 : 없음	직접 지배 : C, D, E 간접 지배 : C, D
C기업	직접 지배 : B 간접 지배 : A, B	없음
D기업	직접 지배 : B 간접 지배 : A, B	없음
E기업	직접 지배 : A, B 간접 지배 : A	없음

③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470(A) + 80(B) \times 100\% + 15(E) \times 15\% + 15(C) \times 100\% \times 45\%$   
 $+ 22(D) \times 100\% \times 45\% + 15(E) \times 100\% \times 45\% = 575\text{명}$
- B기업 =  $80(B) + 470(A) \times 100\% + 15(C) \times 45\% + 22(D) \times 45\% + 15(E) \times 45\%$   
 $+ 15(C) \times 40\% \times 45\% + 22(D) \times 40\% \times 45\% = 579\text{명}$
- C기업 =  $15(C) + 80(B) \times 45\% + 470(A) \times 100\% \times 45\% + 80(B) \times 18\% = 276\text{명}$
- D기업 =  $22(D) + 80(B) \times 45\% + 470(A) \times 100\% \times 45\% + 80(B) \times 18\% = 283\text{명}$
- E기업 =  $15(E) + 470(A) \times 15\% + 80(B) \times 45\% + 470(A) \times 100\% \times 45\% = 333\text{명}$

**Tip**

1. 상호 간에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많은 비율을 적용
2. 상시 근로자 수의 최종 합산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

④ 매출액,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도 ③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사례23

아래 기업군의 경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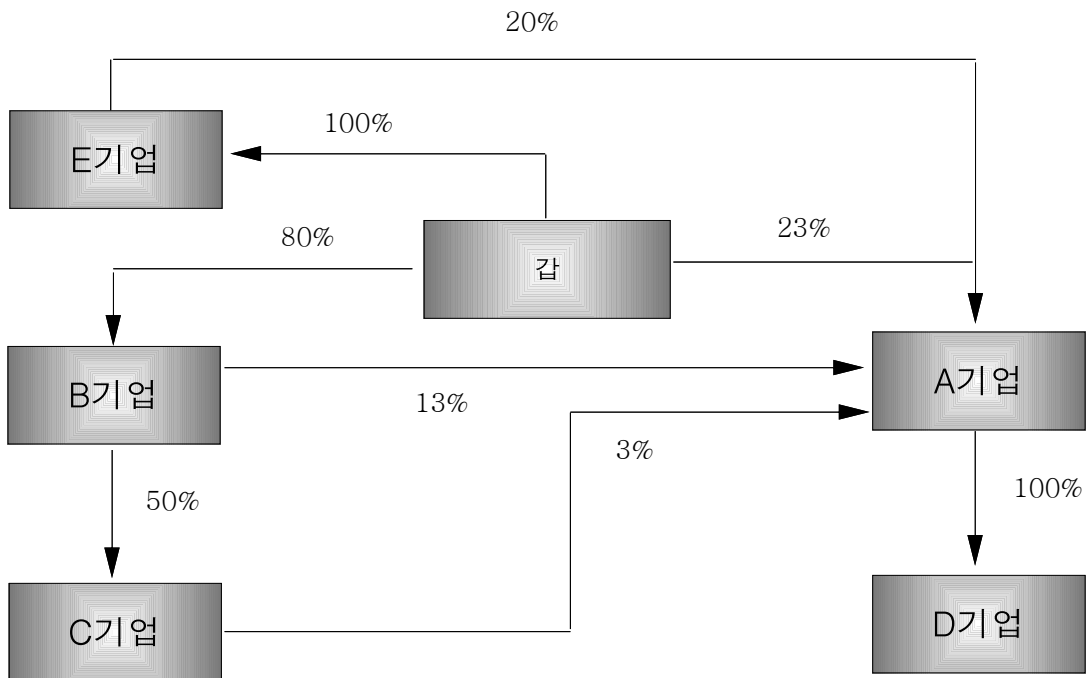
<주식 소유 비율(%)>

주주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갑	23	80			100
A기업				100	
B기업	13		50		
C기업	3				
D기업					
E기업	20				
기타	41	20	50		
합계	59	80	50	100	100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 등(명)>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상시 근로자 수	270	138	98	96	41

① 위의 표를 주식 소유 관계에 따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직접 지배 : B, E 간접 지배 : B	직접 지배 : D 간접 지배 : 없음
B기업	없음	직접 지배 : A, C 간접 지배 : A, D
C기업	직접 지배 : B 간접 지배 : 없음	없음
D기업	직접 지배 : A 간접 지배 : B, E	없음
E기업	없음	직접 지배 : A 간접 지배 : D

③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270(A) + 138(B) \times 13\% + 41(E) \times 20\% + 138(B) \times 3\% + 96(D) \times 100\% = 396$ 명
- B기업 =  $138(B) + 270(A) \times 13\% + 98(C) \times 100\% + 270(A) \times 3\% + 96(D) \times 13\% = 291$ 명
- C기업 =  $98(C) + 138(B) \times 100\% = 236$ 명
- D기업 =  $96(D) + 270(A) \times 100\% + 138(B) \times 13\% + 41(E) \times 20\% = 395$ 명
- E기업 =  $41(E) + 270(A) \times 20\% + 96(D) \times 20\% = 114$ 명

④ 매출액,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도 ③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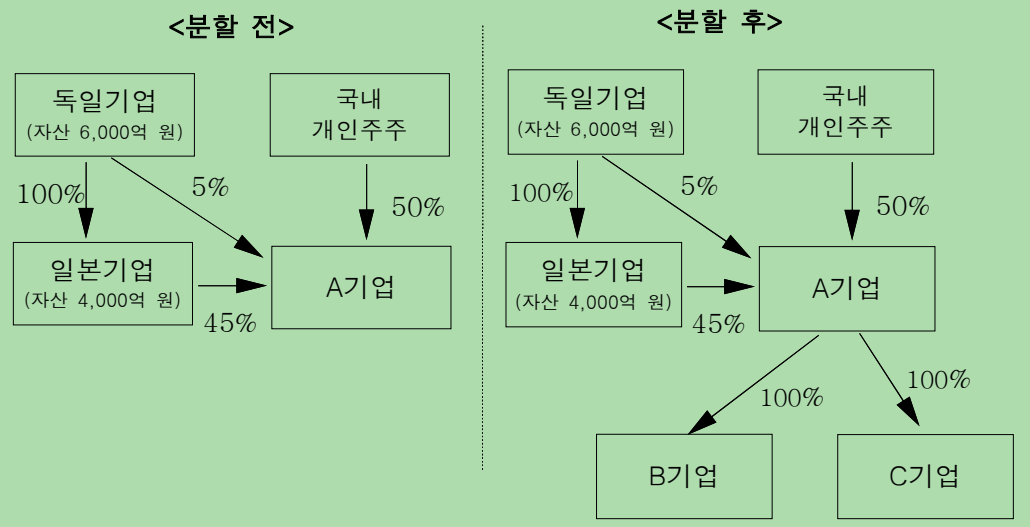


사례24

주업종이 제조업이었던 A기업이 2008년 상시 근로자 수 290명, 자본금 160억 원, 매출액 1,300억 원이며, 2009.1.2일에 두 개의 사업부를 분할하여 A기업은 존속하고 B, C기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분할 후 A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B, C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A기업의 2009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210명, 자본금 100억 원, 매출액 1,000억 원이고 B, C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50명, 자본금은 각각 30억 원입니다.

분할 전후 지분 소유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B,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① A기업은 분할 후 존속법인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의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분할 이후 A기업이 실질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도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을 기준으로 2009년도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분할 이후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므로 2009년도는 중소기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주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되며, 2009년도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 ② 또한, A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독일기업이 직접 5%, 간접으로 45%의 발행 주식을 소유하여, 합산하여 50%의 발행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간접 소유 규정(2009.3.27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간접 소유가 2009.3.27일 이전부터 성립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3.25> 제2조의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가 부여되어 2011.12.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B, C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A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9.1.2일부터 2009.3.26일까지는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이고, 2009.3.27일부터 2011.12.31일까지는 동 부칙 제2조의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가 부여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 ③ 한편, A, B, C기업은 2011.1.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A기업이 B, C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산정한 A, B, C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각각 업종별 규모기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A, B, C기업은 2011.1.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④ ①,②,③을 종합하면 A, B, C기업은 2009.1.2일부터 2009.3.26일까지는 중소기업이며, 2009.3.26일부터 2010.12.31일까지는 부칙<제21368호, 2009.3.25>제2조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며, 2011.1.1일부터는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참고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유예기간을 부여받던 기업이라 할지라도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 시행령 제9조의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되며, 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를 부여받던 기업도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동 부칙 단서에 따라 잔여 경과조치는 소멸됩니다.

#### 사례25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나요?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26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신설합병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나요?

상법상 합병의 유형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며, 두 유형 모두 기존 기업의 재산·사원을 수용하는 등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신설합병이라 하더라도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일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범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합병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산정 방법은 창업의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사례27

중소기업 확인은 어디서 하며, 모든 기업이 신청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 주나요?

중소기업 확인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하는 기관이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합니다.

- ①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 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 ②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 ③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 장애인기업의 우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 서류(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최근 주주명부 등)를 지방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출서류를 확인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메 모
-----
-----
-----
-----
-----
-----
-----
-----
-----
-----
-----
-----
-----
-----
-----
-----
-----
-----

## 3장. 주업종·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기자본 등 세부 적용기준

이 장에서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필요한 주업종, 상시근로자수 등의 상황별 세부 적용기준 및 실무 적용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1 주업종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업종 분류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로 적용합니다.

< 예시 : 모기향을 만드는 기업의 주업종 >

- 제조업(대분류 C)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세세분류 20411)
- 주업종이 제조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규모기준을 적용

#### Tip

1.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2.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kostat.go.kr/kssc>)에서 업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별표1]에 없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이와 같이 정해진 주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Tip

1.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이 업종별로 다른데, 하나의 기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주업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업종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으로 정해지면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으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됩니다..

#### Tip

2012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은 해당 기업의 주업종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규모기준이 낮게 설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주업종 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②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 핵심 포인트

- 적용 1** A기업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250명입니다. 매출액이 제조업 분야에서 15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80억 원 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50명이므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A기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350명,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매출액이 건설업 분야에서 150억 원, 제조업 분야에서 8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 건설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건설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A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적용 3** 주업종이 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의 매출액이 200억 원, B기업의 매출액이 100억 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적용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은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하여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제조업으로 간주하여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Tip**

1. 위 사례의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만 B기업의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2. 2012년 이전에는 A기업은 제조업, B기업은 임대업으로 별표1을 적용하였습니다.

## 2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직원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①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④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간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Tip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li> <li>※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장, 법인의 경우에는登記된 이사를 제외</li> </ul>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li> <li>※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li> </ul>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li> <li>※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임</li> </ul>
연구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li> <li>※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 사무직은 상시 근로자</li> </ul>
단시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li> </ul>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개월 미만인 기업	전달이 있는 경우 전달의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전달이 없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합니다.

**Tip**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제6조제2항제2호가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에 대한 산정방식으로 해당 사업기간 중의 월평균으로 한다는 점을 준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산정일 현재의 인원

## 핵심 포인트

2012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적용 1** 2010년 10월 1일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2011년 1월 ~ 2011년 12월)이므로 2011년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적용 2** 2011년 3월 1일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이 지났으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2011년 3월 ~ 2011년 12월)이 12개월 미만(10개월)이므로 2012년 4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11년 5월 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적용 3** 2011년 7월 1일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이므로 창업·합병·분할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눈 인원

**적용 4** 2012년 4월 1일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2012년 4월 말일 현재의 인원

**적용 5** 2012년 5월 1일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2012년 5월 10일 현재의 인원

2012년 5월 10일에 관계기업 제도 적용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적용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적용 2** 2011년 3월 10일에 창업·분할·합병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분할·합병이 속하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인원

메 모

-----  
-----  
-----

### 3

## 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 기준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 Tip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
- 재무상태표 :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로 구성(자산총계 = 자본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자기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 통상적으로 자본금이란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자본계정 중에서 자본금만을 의미하지만,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있어서 자본금이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또한,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를 말하며, 자산총액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를 말합니다.

#### Tip

- 자본금의 경우 종전에는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의 경우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외감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자산총액과 자기자본에 대한 규정은 종전에 세분화되지 않았던 것을 2012년부터 자본금과 같이 세분화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기자본·자산총액

-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적용에 모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은 모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Tip**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두 가지 환율 중 낮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외환위기와 같이 단기적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자본금)**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자산총액)**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자기자본)**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기자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 핵심 포인트

**적용 1** A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자본총계가 400억 원(자본금 50억 원, 자본잉여금 20억 원, 이익잉여금 300억 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억 원), 부채총계가 100억 원인 경우,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은?

☞ A기업의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50억 원)과 자본잉여금(20억 원)을 합한 70억 원이며,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인 400억 원, 자산총액은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계인 500억 원입니다.

**적용 2** 건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0명, 자본총계가 70억 원(자본금 25억 원, 자본잉여금 20억 원, 이익잉여금 25억 원)인 유한회사입니다. 자본금 및 자기자본?

☞ A기업의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25억 원)과 자본잉여금(20억 원)을 합한 45억 원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자본금(25억 원)과 자본총액(70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인 70억 원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이므로 70억 원입니다.

**적용 3** A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본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적용사례를 따르고, 자본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만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 4** 2009년 1월에 창업한 기업의 2009년 5월 현재 자본금 산정은?

☞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이므로 창업일 현재의 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과 자산총액도 동일한 방식 적용

**적용 5** 2009년 9월에 창업(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2010년 2월 현재 자본금 산정은?

☞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이므로 2009년도 말일 현재의 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과 자산총액도 동일한 방식 적용

4

매출액 기준

-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그러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1년간의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급격히 변동되므로 창업에 준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후 다시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포함되는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다음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따른 매출액은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Tip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제7조제2항제2호가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에 대한 산정방식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는 점을 준용합니다.

- 모든 기업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회계장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도 세법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에 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  
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핵심 포인트

**적용 1** A기업이 2009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10년도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10년 3월에 산정하는 경우 : A기업은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지만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2010년 2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9년 3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010년 1월에 산정하는 경우 : A기업은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았으므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2** A기업이 2010년 3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10년 3월 30일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므로, 2010년 3월 5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인 26로 나누고 다시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3** A기업이 2010년 3월 20일에 창업한 경우, 2010년 4월 25일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창업한 달의 다음 달이 1개월 미만이므로 2010년 3월 20일부터 2010년 4월 25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인 37로 나누고 다시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28 프랜차이즈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업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입니다.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규모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례29 객실 매출액이 200억 원이고 직영하는 식당, 커피숍의 매출액은 300억 원인 호텔의 경우 주업종은?

일반적으로 호텔은 객실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 및 음식료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서로 다른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호텔업을 주업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텔에서 직영하는 커피숍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대시설의 매출액이 크더라도 주업종은 호텔업이고,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30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업종이 동일한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세분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컴퓨터 제조(컴퓨터 제조업, 26310), 소프트웨어 CD제조(기록매체 복제업, 18200), OLED 제조(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는 모두 대분류인 제조업(C)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판단하며, 도매업(G)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비교하여 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사례31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기업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PC를 구입하여 소프트웨어와 함께 재판매함. 소프트웨어보다 PC의 매출액이 클 경우 A사의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의 주업종은 매출액이 많은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A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 주업종입니다.

소프트웨어는 PC가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텔이 커피숍을 부대시설로 갖추는 것과는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32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A기업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80명·매출액은 20억 원이고 도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10명·매출액은 200억 원인 경우에 A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A기업은 도매업의 매출액이 많으므로 도매업이 주업종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합산하면 290명과 220억 원으로 도매업의 규모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위기준의 초과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3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34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지휘와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를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35

하나의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본금 등도 모두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참고 바랍니다.

사례36

A기업이 외국에 출장소(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도 상시 근로자로 보나요?

해외시장 진출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해 외국에 법인격이 없는 지점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국내기업의 조직(부서)입니다. 따라서 A기업이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인에서 직접 고용한 자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입니다.

사례37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의 경우 2회의 결과만으로 평균 인원을 산정한다면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 가능한 다른 서류(고용보험납부영수증, 의료보험납입영수증,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 대장 등)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직전 과세 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반기에 한 번 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38

고용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인이 1,2,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쉬 후 5,6월을 근무할 경우 동일인이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단기간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업무 수행이 끝나고, 새로운 업무를 위해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씩 연속적으로 반복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규 채용 후 3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불연속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39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근로소득란의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 중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에서 중도 퇴사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소·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기청 고시 제2009-8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실무 적용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에 표시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일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급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표시된 근로자 수가 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간이세액의 인원으로 산정하여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퇴사나 신규 채용이 발생하여 간이세액의 인원을 연평균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 근거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40

12월말 결산법인인 A기업은 2010년 2월에는 2009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매출액·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의 2010.2월 현재 중소기업 여부는 2009.12월 결산 결과를 적용하여야 하며,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공증

받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대부분 3월경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지만 자본금·매출액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결산 재무제표와 확정 재무제표의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인정기간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41

3월 결산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때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9개월이라고 하여 9개월의 매출액만으로 산정한다면 12개월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므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일의 변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기간이 9개월이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9개월의 매출액과 이전 3개월을 소급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메 모

-----  
-----  
-----  
-----  
-----  
-----  
-----  
-----

메모

Lined area for notes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 참 고 자 료(법 령)

-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 중소기업기본법(현행)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현행)
-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현행)

지난 법령은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내 모든 법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 제·개정 일반현황(15회 개정)

일자	주요내용
20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편입하고 세부규정 마련</li> <li>▪ 중소기업 인정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경과 후 1년간으로 변경</li> <li>▪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을 확대(200명·200억원 → 300명·300억원)</li> <li>▪ 자기자본 상한기준을 상향 조정(500 → 1,000억원)</li> <li>▪ 일부 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10 →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4개 업종</li> </ul> </li> <li>▪ 독립성 기준을 일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확대</li> <li>-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등</li> </ul> </li> </ul>
2009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완화</li> </ul>
2009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분류를 대분류체계로 일원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대분류(6개), 중분류(8개), 소분류(6개), 세분류(6개), 세세분류(6개)등 32개 업종 → 18개 업종(대분류기준)으로 일원화</li> </ul> </li> <li>▪ 상한기준 추가('12.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li> </ul> </li> <li>▪ 독립성 기준 강화('11.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5천억 이상인 대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li> <li>▪ 관계회사 제도 도입</li> </ul>
2007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법령용어 단순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li> </ul>
2005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통신업, 방송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등 13개 서비스업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li> </ul> </li> <li>▪ 상장·비상장여부 관계없이 자산 5천억 이상인 대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l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2002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알선업, 창고업, 운송서비스, 도매,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그밖의 업종의 범위 200% 확대</li> <li>▪ 상한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li> <li>▪ 독립성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li> </ul>
2000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기준 폐지 및 기준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6개 업종(특례업종 310개)을 35개 업종으로 단순화</li> <li>- 상시근로자 or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도입</li> </ul> </li> <li>▪ 상한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수 1천명</li> </ul> </li> </ul>
1997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성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ul> </li> <li>▪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 200인 → 300인 이하</li> <li>- 병원업 : 100인 → 200인 이하</li> <li>- 관광호텔업 : 100인 → 200인 이하</li> </ul> </li> </ul>
1995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 독점거래법에서 정하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li> <li>▪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li> <li>▪ 소기업의 범위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20 → 50인</li> <li>- 건설업 20 → 30인</li> <li>- 서비스업 5 → 10인</li> </ul> </li> </ul>
1992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기준 상향 및 5단계에서 8단계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 80, 120, 160, 200, 300억원</li> <li>- 변경 : 120, 150, 200, 250, 300, 400, 500, 600억원</li> </ul> </li> <li>▪ 일부업종의 상시근로자 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처리업 200 → 300인</li> <li>- 도매업 30 → 40인</li> <li>- 택시운송업 등 10개 업종의 기준 추가</li> </ul> </li> </ul>

<p>1987 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업종 기준 확대 및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수 : 최대 700 → 1,000인</li> <li>- 자산총액 : 최대 120 → 300억원</li> </ul> </li> <li>▪ 주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의 기준 명확화</li> </ul>
<p>1986 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li> <li>▪ 특례업종을 93개 업종으로 확대</li> </ul>
<p>1983 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부품제조업 등 30개 업종에 대해 최고 상시근로자수 700인까지 기준 확대</li> <li>- 일부 업종의 자산 상한기준을 도입</li> </ul> </li> </ul>
<p>1982 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기준(상시근로자수)으로 업종별 규모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광업, 운송업 : 300인 이하</li> <li>- 건설업 : 200인 이하</li> <li>-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20인 이하</li> </ul> </li> <li>▪ 소기업자의 범위기준 최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 20인 이하</li> <li>-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5인 이하</li> </ul> </li> <li>▪ 유예기간을 최초 도입</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 신설</li> </ul>
<p>1976 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0인 → 300인</li> <li>- 건설업 : 50인 신설</li> <li>- 상업 등 서비스업 : 자산 1천만원 → 5천만원(도매업 2억원)</li> </ul> </li> </ul>
<p>1966 1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광업,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인 이하 or 자산 5천만원 이하</li> </ul> </li> <li>▪ 상업 등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인 이하 or 자산 1천만원 이하</li> </ul> </li> </ul>

## 중소기업기본법<제10952호, 2012.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①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 확보)**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



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운영)**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음부즈만을 둔다.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ombudsman”으로 본다.

⑤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지원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ombudsman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읍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952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3412호, 2012.1.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산정일 현재의  
인원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제7조의3(자기자본)**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기자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확인 요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제13조(중소기업 읍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읍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 하는 사람
-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중소기업 ombudsman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ombudsman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 실적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 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 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 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300	400	500

제정 2010. 3.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3호  
일부개정 2010.12.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45호  
일부개정 2011. 5.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6호  
일부개정 2012.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2호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제3장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관계기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명단 게시 절차

**제4조(제외기업 명단의 게시)**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제외기업”이라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게시의 시기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외기업의 명단을 분기에 한 번 게시하되, 게시 이후에 제외기업 명단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게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외기업 명단의 게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당 기업의 의견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외기업 명단을 게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업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통지의 방법)**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등 소유 관계도(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다만, 원천세의 반기납부자 등 매월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 임금지급대장 등 매월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각 1부



3.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 매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해당 기업에 한함)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원본 1부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원본 1부
6.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영 제7조의4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③ 제1항 제2호~제7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을 통해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송달”은 “통지”로 본다.

**제8조(정보의 범위)** 제4조에 따라 게시되는 제외기업 명단에는 해당 기업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및 경과조치)** 종전의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명단 고시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4호)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법인」(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6호)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 및 고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 주식등 소유 관계도

① 주식등 소유 비율  
(%)

기업명 주주(출자자)	당 사	A회사	B회사	...
당 사				
A회사				
B회사				
특수관계자(갑)				
특수관계자(을)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3조의2에 따라 당사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외국법인은 제외)
- \* 특수관계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

② 상시 근로자 수 등 현황

기업명 현황	당 사	A회사	B회사	...
법인번호				
상시근로자수(명)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자산총액(백만원)				

- \* 등 사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현황만을 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대표이사 (인)

<유의사항>

-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既지원 받은 사항의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정보는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중소기업종합상담은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청**

[www.smba.go.kr](http://www.smba.go.kr)